

# 박완서 장편소설 『서있는 여자』의 페미니즘 정치학적 의미\*

: 결혼이라는 '계약'을 통해 본 시민성의 젠더 구조

신셋별\*\*

## 차례

1. 87년체제가 누락한 시민 : 여성은 아직 광장에 '서있다'
2. '떠도는 결혼'에서 '서있는 여자'로 : 평등과 여성의 자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
3. 성원이되 시민은 아닌 여성 : 경숙의 경우
4. 시민이되 성원은 아닌 여성 : 연지의 경우
5. 시민이자 동시에 성원인 여성은 가능한가 : 여성-시민권을 위하여

## 〈국문초록〉

2016년 가을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페미니즘 운동은 소위 '87년체제' 이후의 한국사회를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페미니즘 운동이 '정체성 정치'의 일환으로 평가되면서(일면 폄하되면서) 그 함의가 다음 민주주의에 대한 진지한 발언과 요청으로 충분히 숙고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페미니즘 운동이 외치고 있는 것은 법과 제도, 문화를 막론하는 한국사회 전영역의 쇄신과 전환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법·입법·행정 전반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아온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87년체제가 조형하고 장려해온 권력구조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뜻하며, 그 질서의 기반인 남성 본위의 '시민사회'와 '시민' 범주의 변경이 필요함

\* 이 글은 2018년 11월 10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8년 한국여성문학학회 가을 학술대회-1980년대, 박완서 소설과 사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을 역설한다.

결혼과 관련된 여성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룸으로써 1980년대 한국사회의 ‘성원’이자 ‘시민’으로서의 여성의 자립 가능성을 탐문하고 있는 박완서의 『서있는 여자』는 1985년 출간 이후 대중적 인기를 얻었는데, 그 배후에는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촉발된 대규모 변혁운동의 하위 범주였던 여성운동의 활기가 있었다. 이 소설에는 87년체제 안으로 미처 수렴되지 못한 1980년대 여성의 삶의 진상과 그로부터 뻗어 나온 정치적 상상이 잠재돼 있으며, 이는 87년체제의 결함과 다음 민주주의의 전망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시의적 지침을 제공해 준다. 모녀의 서사로 이중화돼 있는 이 소설은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실험이 실패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정밀하게 보여준다.

첫째, 교수 남편을 둔 중년 여성 ‘경숙’이 삶의 공허를 말하며 부부 사이의 사랑의 등가 교환을 주장하자 남편은 결혼의 과탄을 일방적으로 선언한다. 어머니자 아내로서의 지위에 합당한 성적 분업에만 충실해온 경숙의 갑작스러운 사랑 요구가 결혼 계약의 연장을 중단시키는 사건이 되는 이와 같은 설정은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계약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결혼 계약의 특수성을 암시한다. 통상의 계약과 달리 여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결혼 계약에서 여성은 자유로운 계약의 조정 및 합의의 권리를 갖는 근대적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 소설에서 여성이 이혼을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권적 행위가 되며, 그녀는 자신에게 강요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에만 한정적으로 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경숙의 딸인 ‘연지’는 그녀가 삶의 목표로 삼은 남녀평등을 결혼 계약에서 실현하고자 한다. 그래서 남편 ‘철민’이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그녀는 기자로서 가계의 재정을 책임지기로 약속하고 그대로 이행한다. 그러나 사회적 시선과 압박 속에서 이와 같은 규범적 성역할의 전도는 계속적으로 부부 간의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되고, 심지어 연지는 임신과 낙태를 경험하면서 남성적 역할 수행에 한계를 느낀다. 남성과 여성의 차

이를 소거한 남녀평등의 추구는 결과적으로 이들 부부를 불행으로 몰아가고,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연지는 가족과 사회와의 연결망이 끊어진 채 고립돼버린다. 이는 근대의 계약 주체인 ‘시민’이라는 추상 속에 ‘성차’라는 조건과 여성의 구체적 삶이 새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 소설에 따르면 여성은 연지처럼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남성에게 끼워 맞추려 애쓰거나, 아니면 경숙처럼 남성이 강요하는 여성의 모습에 자신을 동일화하면서 단지 사회의 성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요컨대 시민권(citizenship)과 성원권(membership) 사이에서, 이 소설은 여성의 자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떤 출구를 모색해야 할지 질문하고 있다. 두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올바른 해답은 아닐 것이다. 여성이 시민이자 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내기 위해 이 소설은 ‘여성-시민’의 불가능한 재현을 시도하고 있다.

핵심어 : 시민권, 성원권, 페미니즘, 박완서, 서있는 여자, 결혼, 계약, 여성

## 1. 87년체제가 누락한 시민 : 여성은 아직 광장에 ‘서있다’

2016년 가을부터 시작된 반년 동안의 ‘촛불혁명’<sup>1)</sup> 이후 한국사회의 다음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은 소위 ‘87년체제’에 대한 성찰과 반성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sup> 현존하는 정치적 현실이 1987년에 연원을

- 
- 1) ‘촛불혁명’이라는 개념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글은 ‘혁명’의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 묻은 한 연구(김광기, 『베버, 뒤르케임, 슈츠, 그리고 2016~2017년 : 촛불혁명을 보는 사회학의 시각』, 『한국사회학』52(2), 한국사회학회, 2018.5, 85-113쪽.)의 결론을 따라서 ‘촛불혁명’이 ‘혁명’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출발한다.
  - 2) 촛불혁명을 87년체제에 대한 비판의 계기이자 전환의 기점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다음의 글들에서도 찾아진다. 권영숙, 『촛불의 운동정치와 87년 체제의 ‘이중 전환’』, 『경제와 사회』 통권 제117호, 비판사회학회, 2018.3, 62-103쪽; 김상준, 『2016-2017

두고 있다는 발상의 공유 속에서 87년체제가 생산·재생산해온 각종 법적·제도적·문화적 장치들의 역할과 그 기능이 근본적으로 심문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학계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문제제기와 대안들이 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촛불혁명에 내재돼 있던 다음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일단 개헌으로 실현해 보이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는 비록 국회의원 정족수 미달로 투표에 부치지지는 못했으나 지난 3월 26일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촛불혁명과 거의 동시에 시작돼 거의 두어 해가 지나도록 이어지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은 87년체제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진지한 발언과 요청으로 충분히 숙고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sup>3)</sup> 여성의 신체에 대

---

년 촛불혁명의 역사적 위상과 목표-‘독재의 순환고리 끊기’와 ‘한반도 양국체제 정립’, 『사회와이론』 통권 제31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17.11, 63-90쪽; 김선택, 『민주적 정당화의 관점에서 본 정부형태론-촛불혁명은 정부형태의 변경을 요구하였나』, 『공법학연구』18(4),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11, 85-109쪽; 김옥, 『개헌, 눈앞의 꿈수인가 촛불혁명의 완성인가』, 『인물과 사상』241, 인물과사상사, 2018.5, 123-138쪽; 김중엽, 『촛불혁명의 새로운 단계를 향하여』, 『창작과비평』45(2), 창비, 2017.6, 2-9쪽; 손호철,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반복과 차이』, 『현대정치연구』10(2),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7.8, 77-97쪽; 정태석, 『87년 체제와 시민사회 이데올로기-가치들의 변화-촛불혁명과 사회체제 전환의 전망』, 『경제와 사회』 통권 제117호, 비판사회학회, 2018.3, 18-61쪽; 천정환, 『‘1987년형 민주주의’의 종언과 촛불항쟁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 대중민주주의의 문화정치를 중심으로』, 『문화과학』94, 문화과학사, 2018.6, 22-44쪽.

- 3) 천정환은 위의 논문에서 “촛불항쟁”과 “페미니즘 붐기”를 한국의 다음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연속된 두 붐기”로 본다. 그러면서도 “둘 사이의 이음매가 견고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하며 “페미니즘은 일상의 정치와 젠더 구조 전체를 개혁하기 위한 실제적인 ‘정치적’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데, 강요되는 ‘폐해자화’와 정체성의 정치를 뛰어넘을 페미니즘 정치의 자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한다. 이 지적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은 이나영의 ‘미투 운동’에 대한 해석, 즉 “민주주의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직시하자고 주문하고 있다. 여성은 아직도 인간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아직도 모두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고 절규하고 있다.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 『월간 복지동향』234,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8.4, 11쪽.)에 공감하는 입장에서, 박완서 소설을 분석함으로써 페미니즘 정치가 ‘시민’에 ‘정치’를 도입하는 일, 다시 말해 ‘여성-시민’을 상상하고 재현하는 일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말해보려고 한다.

한 법적 통치를 규탄하고 모자(母子)의 실질적 시민권 보장을 주장하는 한국판 ‘검은 시위’,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는 데 무력한 치안 수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해화역 시위’, 사립유치원의 편익과 비리를 방조함으로써 돌봄과 육아의 공공성을 훼손해온 행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을 폭로한 ‘정치하는 엄마들’, 문화예술계를 시작으로 직장, 학교, 가정 등 여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성폭력과 성차별이 상존(常存)해왔음을 고발한 ‘미투’ 운동까지. 대중적 관심과 지지에 힘입은 최근의 페미니즘 운동이 공통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은 법과 제도, 문화를 막론하는 한국사회 전영역의 쇄신과 전환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법·입법·행정 전반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아온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87년체제가 조형하고 유지해온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이며, 그 질서의 기초가 되는 남성 본위의 ‘시민사회’와 ‘시민’ 범주의 변경을 역설한다.

어쩌면 이 공교로운 마주침, 즉 87년체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기류에 페미니즘 운동의 활황이 겹친 우연은 한국사회의 다음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30년의 간극을 넘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1987년의 성공을 재현한 촛불혁명의 광장,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오히려 끈질기게 머물러 있으려 하는 사람들은 왜 하필 여성인가. 그녀들은 촛불혁명의 열기가 많이 식었지만 아직 새로운 민주주의는 도착하지 않은 지금-여기, 그래서 87년체제의 연장 혹은 변이와 다름없어 보이는 한국사회가 자신들의 삶을 바꾸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그녀들은 87년체제가 법제화하고 생활세계 안에서 일구어온 민주주의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사회’를 통한 일상적 정치 참여의 길을 열었는지는 몰라도, 여성의 고약한 삶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일에는 무관심해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 기적처럼 맞이한 이 두 번째 시민혁명의 한복판에서 그녀들은 이번에는 여성의 삶이 바뀌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달리 말해 한국사회가 87년체제 이후의 민주주의를 정립하고 법제화함으로써 ‘여성-시민’의 권리 보장과 일상적 정치 참여가 용이해질 때까지, 혁명의 진지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 2. '떠도는 결혼'에서 '서있는 여자'로 : 평등과 여성의 자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을 나침반으로 삼아 젠더의 관점에서 87년체제의 결합을 살피고 다음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을 모색해보려는 이 글은 1985년 출간된 박완서의 장편소설 『서있는 여자』에 주목해보려고 한다. 1982년 4월부터 1983년 11월까지 『주부생활』에 '떠도는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다가 단행본으로 나오면서 제목이 달라진 이 소설은 1980년대 여성운동과 직간접적으로 교류하면서 여성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장편소설 세 편, 즉 『살아있는 날의 시작』(1980), 『서있는 여자』(1985), 『그대 아직 꿈꾸고 있는가』(1989)의 허리에 해당한다.<sup>4)</sup> 그래서 이 소설에는 197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버려온 여성문제에 대한 박완서의 통찰이 전면화 돼있다.<sup>5)</sup> 1980년대 변혁운동의 하위 범주였던 여성운동의 맥락 속에서, 당대 여성의 삶의 세부와 실질을

4) 이 세 편의 소설을 한데 묶어 논의한 김양선의 연구(『박완서 소설의 대중성 연구 -1980년대 여성문제 소설 다시 읽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3, 215-234쪽.)에서 “1980년대 여성문제 소설”의 “대중성”은 “가정성의 전복”과 “복수의 글쓰기”라는 차원에서 해명된 바 있다. 세 편의 소설이 지닌 형식적 특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더불어 박완서 소설을 ‘민중적 시선의 부재’나 ‘대중성’을 근거로 혹평하는 입장에 수정을 요구하는 단호한 논평이 특히 인상적인데, 그중에서도 박완서 소설이 “당대 여성들의 내부에 잠복한 일탈의지를 대변”하고 있다는 판단은 이 글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 다만 이 글은 결혼 ‘계약’이라는 『서있는 여자』의 중심소재를 고려할 때, 그 ‘일탈의지’가 가부장제/남성성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시민성에 대한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덧붙이고자 한다.

5) 이선미는 『서있는 여자』(세계사, 2012)의 개정판 해설에서 박완서가 1975년 UN이 정한 ‘세계여성의 해’를 계기로 여성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으며, 작가의 에세이를 두루 살펴 그가 여성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개입하는 글쓰기에 부지런했다는 점을 일깨운다. 이 글은 그의 논지를 좇아 『서있는 여자』가 “내면화하고 있는 미풍양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들, 그러나 “모두가 ‘미풍양속’이라고 떠받드는 부덕의 논리가 여성을 희생시키는 논리라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공론화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준”(486-487쪽) 그녀들을 통해 예견해둔 여성운동의 방향이 무엇이었는지를 ‘여성-시민’이라는 조어로써 밝혀보려는 시도다.

장악해 그리는데다 대중성까지 겸비한 박완서의 소설들은 일단 환영받았으되, 그만큼 자주 비판과 토론의 대상으로 부상하기도 했던 듯하다.<sup>6)</sup> 그러나 『서있는 여자』의 출간 이듬해 나온 산문집 『서있는 여자의 갈등』(나남, 1986)에 실려 있는 표제작을 보면, 그 혼란스러운 논쟁 현장을 박완서 자신은 담담하게 통과했던 것 같다.

여기서 왜 길게 책 제목 얘기를 늘어놓았느냐 하면 같은 이야기가 이름을 바꿈으로써 뜻하지 않게 전혀 새로운 독자층과 만난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떠도는 결혼’일 때는 재미있는 가정소설쯤으로 읽히던 것이 『서있는 여자』가 되자 남녀평등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가진 여자들이 찾는 소설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같은 욕구나 갈등을 가진 여자끼리 모인 작은 집 안에서 그 책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에 참석을 요청받는 일도 자주 생겼다. 그 자리에 다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여자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읽을거리를 찾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확인한 셈이었다. 그것은 또한 평등하게 살아가기를 절실히 갈망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게 안 되어 고민하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다.<sup>7)</sup>

박완서가 당대에 이미 간파해 위 인용문 안에 명시해두었듯이 『서있는 여자』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의 기저에는 “평등하게 살아가기를 절실히 갈망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게 안 되어 고민하는 여자”로서의 감정이입이 있었고, 이는 이 소설의 핵심이 ‘평등’이라는 가치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이 불가피하게 경험하는 불평등의 표현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주인공 모녀의 것으로 각각 갈라

6) 1980년대 여성운동과 관련해 박완서 소설이 논의되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논문이 상세하다. 이선옥,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또 하나의 문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4, 8-36쪽;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47, 상허학회, 2016.5, 409-454쪽.

7) 박완서,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애수-박완서 산문집6』, 문학동네, 2015, 115쪽.

지는데, 두 겹의 서사는 결혼의 연장과 해지를 그 뼈대로 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홉스, 로크, 루소로 이어지는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개인은 계약을 통해 공동체 형성에 동의한다. 근대적 인간의 대표 추상인 ‘개인’은 물론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신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계약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원형적 계약이야기를 따른다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꾸리는 일 역시 자유롭고 평등한 두 개인, 즉 남성과 여성이 결혼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맺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서있는 여자』는 근대적 공동체 구성의 원리인 계약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직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결혼의 조정 및 협의의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남성과 여성 각자가 자신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대화의 순간을 공들여 적고 있다. 또 결혼의 이행과 종결에 대해 남녀가 가진 생각의 차이를 제시하면서 계약주체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모습을 상세히 묘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있는 여자』는 결혼이 여성에게만 가하는 강요와 폭력, 성과 노동의 착취, 그리고 그것의 자연화(naturalization)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그럼으로써 『서있는 여자』는 표면적으로 결혼의 연장(어머니 ‘경숙’의 경우)과 해지(딸 ‘연지’의 경우)의 사례를 병렬해 둔 것 같아 보이지만, 심층에서는 계약주체로서 여성이 겪게 되는 부조리를 폭로하며 여성이 처해있는 모순적 삶의 현실을 투시한다. 이 표리부동이 소설의 제목을 ‘떠도는 결혼’에서 ‘서있는 여자’로 변경시킨 ‘진짜’ 힘이 아니었을까. 요컨대 이 소설은 여성이 근대적 계약주체의 추상인 개인의 다른 말, 즉 ‘시민’에 자신을 얼마나 동일화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면서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존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의 잠재성을 가진 『서있는 여자』가 1980년대 중반 대중 여성 독자를 사로잡은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80년 ‘서울의 봄’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민주주의에 대한 다종다양한 소망과 염원이 87년 ‘6월 항쟁’으로 집약되었고, 그렇게 모인 역량이 결국 87년체제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가정해도 된다면 『서있는 여자』는



‘여성’에서 ‘여성-시민’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당시 여성의 정치적 상상을 비정형의 모습으로 담보하고 있었을 공산이 크다. 실제 1970년대 축적된 투쟁력을 기반으로 1980년대 여성운동은 이념, 조직, 실천에서 질적으로 비약했으며, 특히 1987년 2월 결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이라는 우산조직 아래에서 6월 항쟁을 전후한 시기 여성운동은 민주화운동과 실천적으로 과제를 통일시켜 나갔다.<sup>8)</sup> 1987년 10월 『민주여성』 창간사에서 초대 여성단체연합의 회장은 “여성의 해방은 지배와 피지배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모든 억압과 착취가 근절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든 결정과정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지는 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sup>9)</sup> 한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한 바, 1980년대 여성운동의 중심에는 민주적 원리를 채택한 새로운 공동체 건설에의 희망이 있었다. 그렇다면 『서있는 여자』를 다시 읽는 일은 87년체제를 통해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예감했으나 실패한 그 정치적 상상이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차원에서 지금-여기에서도 논의해볼만하다는 전제 위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정희진의 지적처럼 87년체제가 형성한 시민사회에서 여성은 주변화 되었다.<sup>10)</sup> 여성이 ‘시민’과 ‘시민사회’에 등재되지 않는 현실에 불박여 있다는 점에서 30여 년 전 여성들이 이끌린 정치적 상상은 지금-여기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감응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서있는 여자』가 보여주는 정치적 상상을 80년대 대중 독자와 지금-여기의 여성의 것으로 공유하면서 박완서 소설의 페미니즘 정치학적 의미를 재고하고자 하는 이 글의 발상은 캐럴 페이트만의 『남과 여, 은폐된

8) 한국여성 연구회, 『여성학 강의(개정판)』, 동녘, 1994, 371쪽; 정현백, (사)한국여성 연구소 엮음, 『시민사회와 성평등운동』, 『젠더와 사회』, 동녘, 2014, 492쪽.

9) 지은희, 『내부로부터 본 여성운동-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이론』 (22), 한국사회이론학회, 2002.12, 101쪽.

10) “87년체제 이후, 남성은 ‘시민사회’와 ‘민주적 노동조합운동’으로 계급분화가 일어나지만, 여성은 반대였다. 여성운동은 노동계층 여성과 중산층 여성이 ‘여성’이라는 범주로 함께하게 되었고 이것이 여연의 탄생 기반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주변화에 기반한 시민권의 성별화된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다.”(정희진·정현백, 『여성운동의 중심에 물음표를 매긴다』, 『창작과비평』34(3), 창비, 2006.9, 256쪽.)

성적 계약』<sup>11)</sup>과 문승숙의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국민 만들기, 시민 되기, 그리고 성의 정치』<sup>12)</sup>에 대한 적극적 참조로부터 왔으며, ‘시민권’과 ‘성원권’을 둘러싼 사회학·정치학의 논의들을 그 배후에 두고 있다. 먼저 페이트만은 원초적 계약이라는 허구와 함께 시작된 근대 시민사회가 가부장적 정치체제에서 계약론적 정치체제로 옮겨왔지만 그 안에 있는 여성의 존재와 결혼을 비롯한 성적 계약을 은폐해왔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계약에는 노예제의 흔적이 남아있고, 계약이라는 새로운 공동체 구성의 원리는 여성, 노동자, 성매매자 등이 계약주체로 자신을 상정해 남성, 자본가, 성매수자 등과 동일한 보편인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사실상 그들을 종속시킨다.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활동 공간인 공적 영역과 시민 개인의 소유 공간인 사적 영역의 구분, 그리고 후자에 여성을 할당하는 성차별적 기초 위에 건설됐으며, 이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치외법권적 지배의 명분이 됐다.<sup>13)</sup> 요컨대 근대인은 계약 공동체인 ‘시민 공중’이라는 이상을 받아들이면서 남성 중심의 이성적 시민의 동질성 실현을 위해 다른 존재로 규정된 여성의 시민적 지위 (citizenship)는 박탈한 것이다.<sup>14)</sup> 가부장제가 전근대적이라는 우리의 통념과 달리 계약이라는 근대적 외피를 쓰고 오히려 견고해졌다는 페이트만의 논의를 염두에 두면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가부장제에 대한 입장을 근대성 비판, 나아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로 접합시킬 수 있

11) 케릴 페이트만, 이충훈·유영근 역,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이후, 2001.

12) 문승숙, 이현정 역,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국민 만들기, 시민 되기, 그리고 성의 정치』, 또 하나의 문화, 2007.

13)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에 담긴 페이트만의 논지를 정리한 논문으로 이보미, 『페이트만의 페미니즘 연구-계약론 비판을 중심으로』(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를 참조할 수 있다.

14) 아이리스 메리언 영, 김도균·조국 역, 『차이의 정치와 정의』, 모티브북, 2017, 258-259쪽, 페이트만의 *Feminism and Participatory Democracy: Some Reflections on Sexual Difference and Citizenship*.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Western Division meeting, St. Louis, April, 1986.) 논점을 요약해둔 부분을 참조.

는 여지가 생긴다.

그런가하면 문승숙은 한국사회가 군사주의, 가부장주의와 공모하며 발전해왔다는 것을 여러 사료들을 열거하며 입증해보이고, 그 과정에서 ‘시민성’이 남성적인 것으로 성별화돼 왔음을 주장한다. 한국의 근대성을 시민성과 더불어 분석한 데에 일단 주목하게 되지만, 이 책의 시민성에 대한 접근은 페미니즘적 수정을 대폭 수용하고 있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시민성 개념에 대해서, 여성주의자들은 맥락적, 제도적, 정치적으로 표현되는 관계와 실천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 관계와 실천은 특정한 문화와 역사 안에 위치하고 그에 의해 성격이 만들어지고 행동으로 향하게 된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정치를 개념화하는 프로젝트다...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모성주의 견해와는 다르게 말이다. 아주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나는 그것을 ‘민주주의적’ 시민성 개념이라고 부르려고 한다.”<sup>15)</sup> 이와 같은 매리 디에츠의 문장을 인용한 뒤 루스 리스터의 시민성 개념의 재구성<sup>16)</sup>을 받아들여 문승숙은 시민성을 이렇게 정의한다. “나는 시민성을 정치 체제의 민주적 구성원이 되기 위한 실천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그것은 형식적인 권리를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고 권리의 경계를 재정 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협상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sup>17)</sup> 이러한 관점에서 읽는다면 1980년대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시민’이 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평등’의 진의와 그 실현 가능성을 기

15) Mary Dietz, "In Search of Citizen Ethic." *In Reconsidering the Democratic Public*, eds. George E. Marcus and Russell L. Hanson,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3. (문승숙, 앞의 책, 25쪽에서 재인용.)

16) “국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 체계라는 특성을 가지는 공식적인 지위로서만 시민성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권리와 의무의 실천으로 그것을 정의한다. 새로운 권리를 얻기 위한 투쟁, 기존의 형식적 권리를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기가 거기에 포함된다. 시민성은 그 핵심이 민족 국가에 지배되는 사회와 자기 자신을 변혁시키는 인간 행위성의 표현이다.”(*Citizenship: Feminist Perspectiv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7, pp.36-39, p.41. 문승숙, 위의 책, 25-26쪽에서 재인용.)

17) 문승숙, 위의 책, 26쪽.

하는 『서있는 여자』는 권리의 실질적 보장과 경계의 변경을 위한 여성의 ‘시민성’의 표현 및 실천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박완서 소설을 여성의 관점에서 쓴 한국현대사로 읽는 일은 그리 낯설지 않지만, 박완서가 그러한 증언 속에서 한국사회의 시민성의 젠더 구조를 고찰하고 심문해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롭다. 그리고 이런 가정은 87년체제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예비적 사유를 『서있는 여자』 안에서 찾아 읽게끔 북돋우며 ‘여성-시민’이라는 다소 낯선 지향을 설정해보게끔 한다.

시민성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다시 규정한 위의 맥락은 국경이 사실상 붕괴되고 이주와 난민이 증가하며 국민국가의 경계와 그 주권 권력의 시효가 문제시된 상황을 맞이해 ‘성원권’과 ‘시민권’ 개념을 재고해온 사회학·정치학 연구들<sup>18)</sup>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그 연구들에 따르면 “성원권(membership)은 어떤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갖는 제반 권리와 지위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각종 자격 요건까지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sup>19)</sup> 따라서 시민사회에서 ‘내부적 배제(internal exclusion)’<sup>20)</sup>의 존재이므로 애초 시민권에서는 남성과 비교해

18) 김병곤·김민수, 『이주민 시민권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시민권의 한계와 대안: 벤하비브의 시민권 정치를 중심으로』, 『평화연구』23(1),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5.4, 295-328쪽; 박광형·전희진, 『긴장의 원천인 시민권: 시민권 담론의 다층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문화와 정치』4(2),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7.6, 111-140쪽; 서윤호, 『이주사회에서의 정치적 성원권-벤하비브의 논의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58,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6, 195-223쪽; 장미경, 『시민권의 개념의 의미 확장과 변화-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을 넘어서』, 『한국사회학』35(6), 한국사회학회, 2001.12, 59-77쪽.

19) 서윤호, 『분배적 정의와 정치적 성원권-알저의 논의를 중심으로』, 『강원법학』42,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6, 96쪽의 각주1.

20) 정인경은 시민권의 페미니즘적 개조를 타진하는 논문에서 형식적으로는 시민에 포함되지만 열등성을 경험하는 여성의 상황을 ‘내부적 배제’로 개념화한다. “내부적 배제란 시민권이 명시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모형에서 벗어나는 차이가 지적·정치적 역량의 지표로 간주되면서 열등성과 배제가 정당화되는 불완전한 시민권을 가리킨다.”(『시민권의 페미니즘적 개조를 위한 시론: 뤼스 이리가레(Luce Irigaray)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28(1), 한국여성학회, 2012.3, 3쪽.)

열등한 여성과 관련해, 특별히 성원권에 주목할 때는 여성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마땅히 지녀야 하는 자격, 즉 여성의 규범적 품행이 화두가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여성에게 가해지는 처벌 또는 차별에 주의할 기울이다. 김현경은 시민권과 성원권을 분명히 구별하면서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인 시민권과 달리, 사회적 성원권은 의례를 통하여 끊임없이 확인되어야 한다”<sup>21)</sup>고 말한다. “가부장제도 하에서 여성은 사회 안에 어떤 적법한 자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여성은 단지 스스로를 비가시화한다는 조건으로, 물리적인 의미에서 사회 안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받고 있을 뿐이다. 여성이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동등한 사람으로서 사회 안에 현상하려는 순간, 이 허락은 철회된다.”<sup>22)</sup> 여성이 ‘동등한 사람으로서 사회 안에 현상하려는 순간’이 말하자면 시민성의 발생을 뜻하는 사건이며, 이는 사회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허락 철회’ 즉 성원권 박탈의 위협을 동반한다.

『서있는 여자』의 경우 주인공 모녀는 결혼 상대자 남성뿐만 아니라, 그녀들을 둘러싼 가족, 친구, 동료, 지역, 넓게는 국가라는 여러 겹의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녀들이 여러 관계망 안에서 의례적 교류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성원권을 인정받고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미 ‘남성’에게 걸맞도록 설정돼 있는 ‘시민’의 형상에 자신을 기입하려고 애쓰면서 시민성을 발휘하는 대목은 섬세하게 구별해 읽을 필요가 있다. 전자가 ‘성원권’과 관련하여 해석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시민권에 대해 여성에게 주어진 미진한 권리를 능동적으로 보완해나가는 시도, 그럼으로써 ‘내부적(형식) 배제(내용)’라는 여성의 위치를 형식과 내용 양자 모두에서 ‘내부’로 옮기려는 도전이기 때문이다.<sup>23)</sup>

21)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144쪽.

22) 위의 책, 78쪽.

23) 한경희는 박완서의 『목마른 계절』의 진이가 ‘여성’이 되기로 ‘선택’하는 과정을 ‘시민권’과 연결해 해석한 바 있다. “진이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여성’이 되는 것 즉 가부장제로 편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남한이라는 국가를 떠날 수 없다면, 여성이라는 성별을 가진 이들은 최소한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 글은 아래에서 성원권과 시민권이라는 두 개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받는 일이 1980년대 여성에게 얼마나 풀기 어려운 숙제였는지를 『서있는 여자』의 내용을 좇으며 상세히 밝히고, 성원권과 시민권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 주체의 모습이 ‘여성-시민’이라는 새로운 시민 모델의 발명을 촉구하고 있음을 논의할 것이다.<sup>24)</sup>

### 3. 성원이되 시민은 아닌 여성 : 경숙의 경우

『서있는 여자』에는 ‘권한’이나 ‘권리’와 같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힘의 종류와 경계를 표시하는 단어들 이 자주 나온다. 소설은 시작하자마자 ‘경숙’과 ‘연지’ 모녀의 다툼을 그리는데, 싸움의 발단은

---

가부장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거부한다면 여성은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내몰리게 된다.”(『나는 왜 ‘여성’이 되었는가-박완서 장편소설 『목마른 계절』(1978)론』, 『현대소설연구』 7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9, 519-557쪽.) 여기서 ‘시민권’은 ‘성원권’과 대체 가능한 개념으로 ‘시민권’과 ‘성원권’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이 글과는 다른 층위에서 ‘시민권’이 논해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재생산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여성’이 된다는 것은 ‘국가’라는 주권 권력의 질서에 여성이 편입되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목마른 계절』의 ‘여성-되기’는 기실 ‘국민-되기’의 한 양상이다. 한국전쟁 시기를 다룬 박완서 소설에 등장하는 ‘신원증명장치’들의 의미를 해석한 차미령의 논문(『한국 전쟁과 신원 증명 장치의 기원-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주권의 문제』, 『구보학보』 18집, 구보학회, 449-476쪽.)이 ‘시민권’과 ‘주권’을 같은 층위에서 논의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혼란은 ‘주권’, ‘시민권’, ‘성원권’ 등의 개념 정의가 연구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바 없기 때문인데, 이 합의는 한국전쟁 이후 국가 재건부터 군부독재시기를 거쳐 1987년 민주화 이후까지 국민에서 시민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권리’의 확장과 심화에 대한 탐구를 지속해온 박완서 소설 해석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중요 과제로 보인다. 이 글에서 감당할 수는 없는 과제이므로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 24)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정치학적 탐구로는 다음 논문들을 참조할 수 있다. 정인경, 『젠더주류화와 여성의 시민권』, 『한국정치학회보』 46(4), 한국정치학회, 2012.9, 53-72쪽; 정인경, 『적극적 조치, 시민권의 평등을 향한 도전』, 『한국여성학』 33(4), 한국여성학회, 2017.12, 179-207쪽; 이현재, 『우리 사회에 나타난 여성의 시민의식과 시민운동의 여성화』, 『지식의 지평』 20, 대우재단, 2016.5, 1-13쪽.

역시 딸 연지의 결혼 문제다. 결혼 후 미국에 정착해 살면서 소식이 뜸한 아들 내외가 께빚했던 경숙은 연지에게 자기의 마음에 드는 혼처를 소개하려 하고 그 자리에서 연지는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내온 ‘철민’과 결혼하겠노라 선언한다. “자식의 배필을 정하는 데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건 부모의 천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부의 권한을 함부로 침해한 자식을 용서할 수 없는 것 또한 천부의 권한이었다.”<sup>25)</sup> 경숙이 ‘천부의 권한’을 운운하는 1장에서 줄곧 “경숙 여사”(11)로 소개되는 것은 흥미롭다. 이후의 장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 결혼의 연장여부가 불확실해지자 경숙의 이름 뒤에 붙어있는 ‘여사’는 홀연히 사라지는데, 이것은 가정 내의 아내로서의 또는 ‘천부의 권한을 가진’ 부모로서의 입지가 단단하지 못할 때 여성인 경숙이 겪게 될 지위의 흔들림을 가리키는 치밀한 설정으로 보인다.

경숙을 중심에 둔 플롯에서 이혼한 친구들을 방문해 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이른바 “이혼 순례”(154)를 다녀온 후, 그녀는 남편 ‘석태’의 아내로 되돌아간다. 다시 ‘집 안의 여성’으로 살게 된 경숙의 평온하고 화려한 외양을 묘사하는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그녀의 ‘여사’ 지위는 회복돼 있다. “옥색 은조사 치마에 흰 아사깨끼저고리를 받쳐 입은 경숙 여사는 아름답고 우아했다.”(325) 그리고 그녀는 ‘여사’로서 이혼을 각오하고 있는 딸에게 여성에게는 결혼이 아무리 불행할지라도 이혼보다는 낫다는 식의 조언을 한다. “남자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자는 달라. 복 중에 남편 복이 제일이고, 일부중사를 못하면 박복도 그런 박복이 없지만 첫째 사람이 천해져서 못 봐주겠더라.”(332) 여기서 ‘천해진다’는 표현은 인상적이다. 지위 하락에 대한 경숙의 감각은 청결이나 성욕과 관련된 규범적 여성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그녀가 “이혼 순례”에서 친구 ‘박순남’과 ‘곽은선’을 차례로 만나 눈여겨보았던 것은 장기간 돌보지 않아 더러워진 집안 꼴과 공허한 성욕을 달래느라 누추해진 여성의 나신이었다. 즉

25) 박완서, 『서있는 여자』, 세계사, 2003, 13쪽. 이하 같은 책을 본문에서 인용할 경우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

‘현모양처’에 자신을 동일화하며 살아온 경숙에게 ‘집 밖의 여성’의 삶이란 ‘천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지위의 추락 혹은 상실을 의미했다.

그런데 이런 경숙의 모습을 가부장제가 강요하는 규범적 여성상을 무비판적으로 좇는 미성숙의 전형으로 선불리 단순화하기는 곤란하다. 경숙은 과거 남편과의 관계에서 결혼을 두고 자기 지위의 변동가능성을 시험해본 이력이 있다. 부업으로 양품점을 하다가 부동산 투기로 경제적 여유가 생긴 뒤 경숙은 가사에만 전념하게 됐는데, 그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 “아무리 바쁘게 쫓고 닭고 꿏을 사다가 화장실에까지 꿏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잘먹고 웃고 떠들어도 허전함은 채워지지는커녕 더 넓고 깊게 그녀를 쫓먹었다.”(77) 교수 남편이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위해 바빠지자 마음의 병은 더 심해졌고 “어느 날 문득 경숙 여사는 자신이 매사에 의욕이 없고 시들시들 시들어가는 건 남편의 사랑을 못 받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다.”(77) 남편이 조교 ‘미스 현’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정도로 경숙의 공허감은 커졌고, 급기야 그녀는 “나도 피가 통하는 살아 있는 여자임을, 결코 목석이 아님을, 그리고 조강지처의 권위도 함께 보여”(80)주겠다는 생각에 이른다. 이와 같은 경숙의 의지를 따라 읽는다면 ‘권위의 수호를 위한 기혼 여성의 요구’로 들을 수 있는 그녀의 자기주장은 다음과 같다.

그래요, 난 일부종사 못했어요. 하고 싶어도 남편이 하나를 다 줘야 하죠.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나에게 당신의 하나를 다 준 적이 있어요? 반도 안 줬어요. 반의 반? 아네요 그것도 못 돼요. 백분의 일쯤이 얼추 들어맞을 거예요. 백분의 일부종사... 얼마나 억울하냐 말예요. 그 백분의 일이나마 돌려드리겠어요. 백분의 구십구를 나한테서 빼앗은 게 비록 미스 현도 아니고 그 밖의 어떤 여우같은 계집도 아니고 학문이라 해도 그것이 나에게 시앗이긴 마찬가지예요. 시앗 본 여자는 비참해요. 여자로서 최악의 불행이에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싶지 않아요. 이혼해요. 나는 하나를 다 주고, 상대방한테는 백분의 일밖에 못 받는 치욕적인 결혼을 일부 종사라고 미화



시키면서 살기 지겹단 말예요. 나 자신이 불쌍해서 못 견디겠단 말예요.(84)

결혼생활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철저히 교환관계이고 둘 사이의 교환의 양은 정확히 동일해야 한다는 경숙의 논리 저변에는 결혼이 계약이며 계약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데 남편에게 자신이 주는 만큼의 무언가를 똑같이 내어줄 것을 요구하는 이 메시지의 전언에 대해 석태는 그렇다면 이혼을 하는 게 맞겠다는 응답을 내놓는다. “아이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딴 데 가 있는 내 백분의 구십구를 거둬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바치면서 용서를 빌고 이혼은 철회해 달라고 애걸할까, 몇 번이나 그럴 수 있기를 바랐지만 나로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소. 하나를 받고 그 백분의 일부에 못 갚으면서 살아온 것도 천벌을 받을 일인데 거기다 다시 거짓말까지 보낼 수가 없어 솔직하게 말하는 거요. 미안하요.”(86) 이 일을 계기로 경숙과 석태 부부는 딸이 결혼을 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동거를 유지하다가 연지의 결혼 직후 이혼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체결한다.

“참 이상한 내외간이었지. 힘도 많이 들었고. 이혼할 날짜를 정해 놓고 살았으니까.”

“이혼할 날짜를요? 그게 언젠데요?”

연지에게도 그건 전혀 새로운 사실이였다.

“벌써 지났어. 너만 결혼시키고 나선 곧 이혼하기로 합의했었으니까”

“계약결혼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계약이혼이란 소리는 처음이에요. 농담이셨겠죠?”

“나도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단다. 그 말이 떨어지고 나서 이날 입때 남 못 당한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게 농담인 줄 알았다니까.”(146)

소설에서 “계약이혼”이라고 지칭되는 이 합의는 석태와 경숙이 각자 남편과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가정 내의 역할을 분

담하는 것으로 이행된다. 그런데 그와 같이 ‘기능적인’ 삶에서 경숙은 ‘집 안의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성교권(conjugal right)<sup>26)</sup>은 박탈당한다. “하석태 씨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가정적인 남자로 변신해 갔다. (...) 그는 한번도 아내를 안지 않았다. 대개는 서재에서 잤지만 어쩌다 안방에서 잘 적에도 아내의 몸에 손끝도 대지 않았다. 처음 경숙 여사는 남편의 이런 속 다르고 겉 다른 변신에 적응할 수가 없어 거의 미칠 뻔하기도 했다.”(87) 석태가 경숙에게 가한 이 “육체의 수모”(88)는 일종의 형벌처럼, “부부간의 화해의 방법은 육체의 화해밖에”(89) 없다고 알고 있는 경숙에게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곤경”(89)으로 다가온다. 석태와 화해하지 못한다면 연지의 결혼 직후 꿈쩍없이 이혼을 해야 할 텐데, 경숙은 “하석태 씨의 아내 아닌 자신을 상상할 수 없다는, 그 밖의 자신은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72)을 스스로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석태는 경숙이 요구한 ‘동등한 교환’에 해당하는 ‘동등한 역할 분담’에 한시적으로 헌신하면서, 그들이 기존에 맺고 있었던 ‘성애적 관계’를 ‘계약적 관계’로 탈바꿈해 놓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석태와 계약의 주체로서 동등해진 그때부터 경숙은 불안해진다. 그녀가 계약이혼에 합의함으로써 얻게 된 평등이 보장되는 기간은 ‘연지의 결혼 전까지’로 그 시효가 한정돼 있었고, 이혼 순례가 알려준바 ‘집 안의 여성’이라는 표식을 잃은 경숙이 존재의 삭제에 버금가는 지위의 추락을 겪게 될 것은 자명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소설에 그려진 이혼한 여성의 삶에 대한 서술자의 편향을 지적하는 것은 박완서 소설의 한계와 무의식 그리고 이 소설의 배경인 1980년대 한국사회의 젠더 구조를 증충적으로 읽어내기 위해

26) 결혼과 더불어 취득되는 합법적 성관계의 권리로, 홉스는 이를 자연적이지 않은 정치적 권리로 보았다. 이 권리의 가장 밀바탕에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육체적·폭력적 성적 지배가 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재해석하는 페이트만의 논의(『신은 인간에게 배우자를 정해줬다-홉스, 가부장제, 성교권』, 이남석·이현애 역, 『페미니즘 정치사상사』, 도서출판 이후, 2004, 93-122쪽) 참조.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이 초점화하고 있는 결혼에 내재된 불평등을 바로잡으려다 도리어 가정 바깥으로 내몰려 자기 존재가 소멸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인 경숙의 시야에서 말해보자면, 기혼 여성은 사회적 성원권을 지키기 위해 남편과 동등해지기를 포기하고 남성에게 종속되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해야만 하는, 다시 말해 계약주체인 개인으로서의 시민권에는 애초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원초적 명령에 짓눌려 있는 셈이다.

개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계약과 달리, 여성이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는 결혼에서 여성은 자유로운 계약의 주체이자 조정의 권리를 갖는 근대적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따라서 시민이 소유한 것으로 가정되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소설에서 여성이 이혼을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권적 행위로 판단된다. 여성은 계약파기 또는 번복을 선제적으로 도모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일방적으로 아내에게서 성교권을 빼앗아 이혼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그럼으로써 여성이 ‘집 안의 여성’이어야만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성원권을 수단으로 협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석태의 굳게 닫힌 서재 문 앞에서, 경숙은 자기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도 가장 천하고 음탕한 창녀처럼 비하시키고”(73) 애절한 적이 있다. 어쩌면 “여염집 여자가 이혼 소리를 그렇게 경솔하게 담다니”(83)라는 나무람에서부터 시작됐을 석태의 조치들은 결국 경숙을 ‘집 안의 여성’으로 가두고 그녀가 그 자리에 스스로 만족하고 안주하도록 만들었다.

이 소설에는 ‘지배와 복종’ 또는 ‘귀속과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성애적 관계’로 결혼을 의미화하고, 가정을 사적 영역으로 구별함으로써, 시민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시민사회를 형제적 결속관계로 구조화하는 근대 민주주의 공동체 구성의 원형적 장면이 어른거린다. 여전히 ‘가정폭력’이 ‘부부싸움’으로 여겨지고, 그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 남성 시민의 소유권 침해 정도로 축소·왜곡돼 이해되는 시대에 이 소설은 결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성애적 관계의 발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대우하는 계약적 관계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말은 결혼 혹은 그와 닮은 형식으로만 상상되고 실천되는 성애적 관계의 재구성으로부터 ‘평등’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고 87년체제 이후의 민주주의를 실험해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 4. 시민이되 성원은 아닌 여성 : 연지의 경우

“대조적인 모녀”(11)라는 서술자의 논평에 합당하게, 경숙의 딸 연지는 엄마와는 전혀 다른 결혼에 대한 이상과 의지를 품고 있다. 결혼에 있어서 양가의 ‘지체’를 고려하는 엄마에게 “나는 지체란 봉건적인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22)라고 면박을 줄 정도로 연지는 근대적 평등의 가치를 철저히 신봉한다. 어떤 종류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독자적인 생활을 꾸꾸고 있을 뿐 아니라 독자적인 생각도 갖고 있었고, 그 생각의 정당성에 대해서 추호도 양보할 수 없는 신념 또한 가지고 있다고”(23) 자신하는 연지는 결혼이란 계약을 맺는 당사자 남성과 여성, 즉 “우리끼리의 문제”(33)라고 단호하게 정의한다. 이와 같은 생각에 따라 연지는 철민과 독자적인 결혼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의, 말하자면 목적조항에 해당하는 제1의 원칙이란 이것이다. “앞으로 결혼생활에 있어서 자기와 나는 절대적으로 동등하기.”(56) 그러나 이 소설을 통해 “말로써 쉽게 남녀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젊은 여자들, 만만한 남자를 만나서 쉽게 평등을 이루려는 약은 여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보여주려고 했다”(27)는 박완서의 의도대로, 연지는 소설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결혼이라는 특종의 계약에서는 남녀평등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눈여겨볼 것은 연지가 애초 어떤 연유로 ‘남녀평등’이라는 일종의 이상

27) 박완서, 『박완서의 말』, 마음산책, 2018, 135쪽.

적 상태에 강박과 흡사한 수준의 집착을 가지게 됐는가 하는 점이다. 따져보면 그것은 연지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목격한 한 장면으로부터 기인 하는데, 그 장면 속에서 어머니 경숙은 아버지 석태의 서재 문 바깥에 완전히 격리돼 있다. “튼튼하고 엄숙하다”(63)는 느낌을 주는 서재 문 앞에서 어머니는 “하늘하늘 비치는 가운데 속에서 전라”로 “동물성의 소리”를 내며 “어린애처럼 훌쩍이면서 애걸하고 있었다.”(62) 연지가 어머니 경숙의 모습을 ‘남성·문명·성인·인간/여성·야만·아이·동물’의 위계적 도식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이후 연지가 ‘어머니와 같은’ 여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남녀평등에 접근하고자 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준다. 집안에서 경숙에게 유일하게 출입이 제한된 구역, ‘증기’나 ‘연기’로 형용되듯이 불가해하고 모호한 아버지 고유의 영역인 서재의 안쪽을 연지는 마당으로 돌아 나와 창문 밖에서 넘어다보며 동경하고 선망한다.

한집 속에 그렇게도 완강한 거부의 문이 있을 줄이야. 모든 문은 열리기 위해 있는 줄 알았던 그녀에게 아버지 서재의 문은 최초의 불가사의였고 최초의 전혀 틈서리 없는 절망이었다. 그녀는 그 문에 정면으로 도전할 것을 피하고 마당으로 돌아왔다.

서재엔 불이 켜져 있었다. 마당에 잎이 거의 다 떨어진 라일락 나무 그늘에서 서재가 환희 들여다보았다. 아버진 깨어 있었다. (...) 물 끓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증기가 올라오는 게 보였다. 그녀처럼 비스킷을 굽는 대신 손가락 사이에 낀 담배를 어찌다 한 모금씩 빨고 있었다. 그녀는 창 밖에서 냇을 잃고 아버지를 들여다보았다. 창 안의 고독과 충만이 그녀의 가슴까지 넘쳐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날의 어머니가 연지에게 새로운 발견이었다면, 그날의 아버지 역시 새로운 발견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추악한 것의 극단을, 아버지에게선 아름다운 것의 극단을 본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의 비정(非情)조차 아름답게 보였다. 그런 고고한 자기세계를 지키기 위한 비정이 어찌 아름답지 않으랴. 나도 아버지처럼 살았으면.

나도 아버지처럼 살게 하소서. 어머니처럼 살게 될진대 차라리 죽게 하옵소서.(64~65)

서재 문을 사이에 두고 양립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어른의 생활의 표리”(65)를 함축한 장면처럼 각인된 후, 연지는 어머니의 세계를 경멸하고 아버지의 세계를 욕망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다그치며 살아가게 되고 결혼에 있어서도 남성적 주체로 자기를 설정하고 배우자와의 협의를 주도해 나간다. 그 결과 철민이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자신은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가게에 필요한 소득을 책임지기로 하는 합의에 도달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지배하는 서재의 안쪽, 달리 말해 남성적 세계로의 진입이 그녀에게는 번번이 가로막힌다. 연지가 ‘여성으로서의 자기 부정과 남성으로의 동일화’에 실패하는 모습을 이 소설은 ‘공간의 점유’라는 알레고리를 통해 보여준다. 예컨대 주말마다 신혼집을 찾아와 장시간 술판을 벌이는 철민의 친구들을 맞이하고 연지는 부엌에서 화장실로 내쫓기듯 이동을 하게 되는 반면, 남성의 무리는 서재와 침실 등으로 집안을 구획하던 장지를 모두 들어내고 집의 모든 영역을 차지하고 앉아 거기에 “도도한 담론”(128)의 장(場)을 펼친다. “끼워주지도 않겠지만, 끼워준대도 한마디도 참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게 제법 어느 수준에 도달한 것 같은 박학도 놀라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도 재미있게 제법 감각이 번뜩이고 통찰력이 예리한 말솜씨도 알잡을 수만은 없는 거였다. (...) 그들의 기고만장한 지적인 담론의 세계가 본디는 그녀의 것이었던 것을 빼앗긴 것처럼만 억울했다. 그것을 빼앗긴 그녀는 부엌테기일 뿐이었다.”(129)

남성적 세계에 소속되고 싶은 욕망이 커질수록 연지의 열패감은 증폭된다. 물론 연지의 이와 같은 실패는 그녀가 아버지의 서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을 남녀평등이라고 인식한 데서부터, 즉 성의 이분법적 구별과 위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상적 인간형으로서의 시민을 남성으로 상정한 데서부터 비롯될 것일 터다. 연지는 남성적 세계를 유리창 너머로

힐끗거리며 욕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어머니 세대인 경숙과는 다른 처지에 있었으나, 그 내부자가 될 수는 없었다는 점에는 끝내 ‘남성은 아닌’ 존재였다. 그 좌절감에 여권운동가 현순주 여사를 만나 ‘인물 탐방’이라는 코너의 취재를 하면서 느낀 환멸이 더해지자 연지는 결혼에 대한 자기의 종전 입장을 수정할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한다.

한마디로 실패한 어머니상은 여사의 사회적인 명성까지를 추악하게 만들 만큼 참담한 것이었다. (...) 여태껏 현순주 여사가 여권운동에 앞장서서 보여준 용기 있는 태도, 뜻대 있고 당당한 발언 못지않게 여사가 가지고 있는 보통여자와 다름없는 평범한 가정의 행복 역시 연지가 흠모해 마지않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과 가정을 같이 사랑하고 같이 소유하고 싶은 욕심꾸러기 연지에게 여사는 얼마나 큰 희망이었던가?(135)

손님맛이를 끝내고 뒤처리를 철민에게 모두 미룬 뒤 죄책감과 미안함을 떨쳐내지 못하는 연지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홀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한 건 자신의 일시적인 환상일 뿐일지도 모른다 생각”(138)이 들어 불안해진다. “여자란 여자로 태어나는 걸까? 여자로 만들어지는 걸까? 연지는 단연 여자로 만들어진다는 편이었다. 지금까지의 이런 생각조차 흔들리고 있었다.”(139) “남보기에 여자다워 보일 일을 연지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피해 왔다”(140)는 문장이 명백하게 말해주듯이 연지의 결혼계약은 ‘남성-되기’의 유력한 방편이었다. 계약의 주체로서 철민과 동등한 위치에 자신을 놓을 때,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자기를 부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믿을 수 있었고, 그 환상 속에서 자기를 옥죄는 성역할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러나 연지는 현순주 여사와의 만남에서 그것이 단지 기만적 자기암시에 지나지 않았으며, ‘남성-되기’라는 수단으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 그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여성 편에 ‘남성과 같이 되어라’는 새로운 짐을 지우는 데 일조한 것일지 모른다는 각성을 하게 된다. 아버지와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겠다고 상담을 청해온 어머니에게 연지는 이제 “여자가 남자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뿌리깊게 가로놓인 문제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진 않는다”(151)고 말하거니와, 자기가 혐오했던 성차에 대한 본질주의적 입장에 서서 인내를 강요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그런 스스로에게 분노를 느끼고, 한량없는 패배감에 사로잡힌다.

연지는 결혼계약이라는 상징적 사건을 통해 남성과 동등해지고, 최종적으로는 시민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소유하려던 자신의 전략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무참히 깨닫는다. 소설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철민의 외도나 폭력은 이혼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철민이 헌법이나 가족법을 들먹이며 ‘친권’을 주장하고 자기 모르게 중절 수술을 한 연지를 물리력으로 몰아붙이는 순간에 이르자, 연지는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재량으로 발휘하는 여성에게 남성의 세계가 가하는 위협을 고스란히 느낀다.<sup>28)</sup> 이제 계약의 파기를 결단해야 하는 수순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연지는 뜻밖에도 아버지의 심오한 질문과 맞닥뜨려 주춤하게 된다. 그 질문은 유리창 너머 아버지의 서재를 흠모해온 연지가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에서 철민을 내보내고 그곳에 서재 안쪽을 닮은 자기만의 세계를 꾸밀 것을 꿈꾸면서 이혼을 쉽게 결심한 데 대한 뼈아픈 꾸지람의 철퇴 같았다. “그렇게 똑똑한 애가 왜 결혼을 처음부터 잘할 일이지 그따위로 했냐? 철민이가 너한테 많이 기우는 상대라고 느이 엄마가 못마땅해 하건 말건 나만은 네 편을 들었던 것도 똑똑한 애의 선택을 믿었기 때문이야. 근데 지금 와서 이 꼴이 뭐니. 결혼할 때도, 누가 뭐래도 너무 자신만만하더니 이혼도 너무 자신 있게 하려고 해. 처음 결전도 후회의 여지가 있었듯이 이번 결정도 후회의 여지가 있으리란 생각을 어찌하면 그렇게 못하냐? 네가 정말 똑똑한 애라면 네 최초의 결정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28) 이 대목에 주목하면 후속작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가 ‘법’으로 상징되는 공적 영역, 즉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여성의 시민권이 어떻게 무시되고 침해되는지를 본격적으로 탐구해본 작품일 것이라는 추측을 해보게 된다.



이 결혼을 어떡하든 끌고 나갈 거다.”(306)

결혼이라는 계약을 체결하며 시민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누군가의 아내로서의 사회적 지위인 성원권을 얻고자 한 연지의 계획은 얼마나 무모했던가. 그녀는 남편이 권력자로 군림하는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하자마자 아버지가 자신을 딸로 받아들여 줄 것인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아내도 딸도 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성원권 상실의 위기감은 계약파기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연지의 ‘시민적’ 자기결단을 미루게 한다. 앞서 경숙의 경우가 보여주었듯이 기혼 여성은 이혼을 운운할 권리, 즉 계약파기의 권한이 없다. 이혼을 하면 딸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협박과 함께 건네받은 아버지의 질문은 그러므로 남성의 세계가 연지에게 보내 온 최후의 통첩 같다. 이 경고장은 연지에게 ‘네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결혼이 잘못됐으니, 지금 하려는 이혼도 틀린 것일 수 있다’는 추궁으로 들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자율성을 발휘하고자 했던 결혼과 이혼이 거꾸로 그녀의 자율성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스스로 의심하게끔 만드는 증거로 활용되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뇌에 빠진 연지의 태도가 옳건 그르건, 연지의 혼란과 주저는 당대 여성의 존재 형식이 자율성이라는 능력을 둘러싸고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드러내주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sup>29)</sup> 그 모순이란 무엇인가.

여성은 결혼계약의 주체가 되어 일시적으로나마 시민이고자 하지만, 기혼 여성이 되면 그녀에게 허락되는 것은 성원권 뿐이다. 다시 시민으로 돌아가고자 계약파기를 결단할 때에도 여성은 자율적 주체로서의 능력을

29) 여기서 사용된 ‘자율성’ 개념은 물론 ‘이성적’ 인식과 판단, 선택과 책임의 능력을 가리키는데, 이 개념이 남성을 기준으로 하는 ‘개인’, ‘시민’ 등과 마찬가지로 젠더 편향적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자율성’을 페미니즘적으로 고찰하고 그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철학적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들을 참조할 수 있다. 허라금, 『여성주의적 ‘자율성’ 개념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학』11, 한국여성학회, 1995.12, 7-26쪽; 허라금, 『여성의 행위성과 가족 관념의 재구성』, 『철학논총』67, 새한철학회, 2012.1, 297-316쪽; 허라금, 『관계적 자율성에 대한 철학적 연구-질차적 자율성과 실질적 자율성 논쟁을 중심으로』, 『철학』 제120집, 한국철학회, 2014.8, 103-129쪽.

심문 당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는 성원권마저도 빼앗겼다는 위협을 받는다. 결말에서 연지는 부모의 반대와 철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과기의 주체로 자기를 곧추 세우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혼 후 그녀는 부모와 동떨어져 고립된 작은 공간 하나를 점유할 수 있게 됐을 뿐이다. “노란 장미”(346)와 “팝송”(346)과 “커피”(347)와 “타이프라이터”(347)가 있는 그 공간에서 그녀는 오렌지주스의 맛과 같은 감미로운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다. 박완서는 그곳에 새로운 사랑에 대한 꿈이 들어설 자리는 아직 없으며, 유대감이란 창밖의 공기로서 환기할 때나 그 공간 안으로 들일 수 있을 뿐이라고 적고 있다. 그녀의 공간은 ‘여성-시민’의 자치(self-government) 영역,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자율성이 불문에 부쳐지고, 여성이 시민권을 보장 받기 위해 굳이 누군가와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계 같다. 그러나 그 밀폐된 공간에 “고독의 압박”(347)이 가득하다면 그곳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러니까 (성애적 관계는 아니더라도) 남성-타자와의 교류와 만남이 불가피한 ‘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성-시민의 자유가 새로운 사랑에 대한 꿈과 유대감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도 보장·확장되는 세계는 『서있는 여자』의 시대에서도 지금-여기에서도 요원해 보이기만 한다.

## 5. 시민이자 동시에 성원인 여성은 가능한가 : 여성-시민권을 위하여

‘시민이되 성원이 아닌’ 연지의 상태는 소설이 그리는 상상적 공간에서만 한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녀가 밀폐된 ‘자기만의 방’에서 한 걸음만 밖으로 나오면 만나게 될 실제 세계에서 연지는 시민도 성원도 아닐 것이다.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그녀가 치르게 될 곤경은 경숙이 위협적으로 느낀 것처럼 지위의 상실 및 실존의 삭체에 준한다. 시민권을 포기하고 사회적 성원으로서의 자리만 겨우 보전하게 된 경숙의 사정이 가부장제 바깥을 지향하지만 그 내부에서 시혜적 인정에 만족하며 머무

르게 되는 여성의 현실을 환기해준다면, 남녀평등의 추상을 좇으며 여성으로서의 자신과는 화해하기가 어려웠던 연지의 모습은 ‘보편적 인권’이라는 말 속에는 담기지 않는 차이로서의 ‘여성성’에 대해 곱씹어 보게 해준다. 결혼이라는 계약을 통해 남성-타자와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시민권과 성원권을 동시에 보장받으려 고투했으나 결국 실패한 두 여성의 삶을 통해 『서있는 여자』는 정체성·다원성의 정치(인정의 정치)와 경제적 해방을 포함한 보편적 인권운동(분배의 정치)으로 크게 양분되는 페미니즘의 흐름 속에서 그 둘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하는 새로운 길을 발명하는 것은 (불)가능한지를 묻는다. 요컨대 ‘시민권’과 ‘보편적 인권’의 범주가 같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 자체로 모순적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차이-평등적’인 ‘여성-시민권’을 위한 페미니즘을 말이다.

지금-여기에 적합한 ‘정의’를 구상하면서 ‘차이의 정치’를 제안한 아이리스 매리언 영은 ‘차이’에 대한 ‘관계적 이해’를 촉구한다. “이제 차이는 타자성, 배제적인 반대항(exclusive opposition)이 아니라, 특유성, 변차(變差, variation), 이질성을 의미하게 된다. 이제 차이는 유사함과 유사하지 않음이 맺는 관계들—이는 같은 외연을 가지는 동일성(coextensive identity)으로도 환원되지 않고, 결코 중첩되지 않는 다름으로도 환원되지 않는다—을 나타낸다. (...) 차이를 관계적으로 이해하면, 오직 피억압 집단들만을 다른 존재라고 표지 붙이게 허용하는 특권 집단들의 위치—예전에는 보편적이었던 그 위치—가 상대화된다. 집단 간 차이가 집단 사이를 비교한 것의 함수로 나타날 때, 백인은 흑인이나 라틴 아메리카인과 마찬가지로, 남성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신체 정상인은 신체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특유한 존재일 뿐이다.”<sup>30)</sup> 이와 같은 인식적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특유성의 존재로서, 각각의 집단이 지닌 차이에 따른 다양한 모델들의 ‘시민권’이 분화·상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시민권’에 내포된 ‘평등’은 차이가 고려되는 방식으로 설계된, 그래서 기왕의 개념과는 다른

30) 아이리스 매리언 영, 앞의 책, 369-370쪽.

뜻을 함축한 ‘평등’이 될 것이다. 여성이라는 굴레에 갇혀 성원권을 간신히 지켜내는 삶(경숙)도, 남성이 되고자 노력한 끝에 허울뿐인 평등을 잠깐 얻는 삶(연지)도, 이와 같은 평등의 진의에는 가닿지는 못했다는 전언을 담고 있는 『서있는 여자』는 성차가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든 구성적인 것이든) 시민권 안으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여성-시민’이라는 새로운 시민적 주체의 탄생을 예감하는 이 소설은 박완서 소설의 1980년대가, 87년체제라는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모델을 만들어낸 당대와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있었는가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다. 그러나 2018년, 촛불혁명과 페미니즘 운동을 통과하면서 한국사회는 1980년대가 빛고 ‘87년체제’로 결정화(結晶化)된 민주주의의 모델이 어떤 한계와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됐다. 사회학자 김종엽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비판하며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촛불항쟁을 87년체제에 대한 비판적 사유의 계기로 수용하면서 당시 촛불항쟁의 주체가 “왜 청소년과 여성이었나”<sup>31)</sup>를 진지하게 묻은 적이 있다. “대학생 대신 청소년들이 전면에 나선 것처럼 여성들 또한 정치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했다. 청소년집단 중에서도 핵심세력은 소년들이 아니라 촛불항쟁의 아이콘이 된 ‘촛불소녀’였다. 이런 사실은 민주화의 문화적 잠재력이 남성을 넘어 여성에게, 더 나아가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축적되었음을 뜻한다.”<sup>32)</sup> 그가 10년 전 촛불항쟁의 한복판에서 발견한 ‘촛불소녀’는 2016~2018년 촛불혁명과 페미니즘 운동의 주역이 돼있다. 그녀들의 성장과 함께 심화되었을 ‘민주화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길목에서 우리는 ‘여성-시민’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과제, 나아가 87년체제 이후의 민주주의를 그녀들과 더불어 실험해야 한다는 요청 앞에 서있다.

31) 김종엽, 『촛불항쟁과 87년체제』, 『87년체제론』, 창비, 2009, 145쪽.

32) 위의 글, 147쪽.

## 참고문헌

### 1. 자료

- 박완서, 『서있는 여자』, 세계사, 2003.  
박완서, 『서있는 여자』(개정판), 세계사, 2012.  
박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세계사, 2003.  
박완서,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예수-박완서 산문집6』, 문학동네, 2015.  
박완서, 『박완서의 말』, 마음산책, 2018.

### 2. 단행본

- 김중엽, 「촛불항쟁과 87년체제」, 『87년체제론』, 창비, 2009, 145쪽, 147쪽.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78쪽, 144쪽.  
문승숙, 이현정 역,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국민 만들기, 시민 되기, 그리고 성의 정치』, 또 하나의 문화, 2007.  
아이리스 매리언 영, 김도균·조국 역, 『차이의 정치와 정의』, 모티브북, 2017, 258-259쪽, 369-370쪽.  
이선미, 「서 있기를 ‘선택’하는 여자의 절망과 용기」, 『서있는 여자』(개정판), 세계사, 2012, 466-487쪽.  
정현백, (사)한국여성연구소 엮음, 「시민사회와 성평등운동」, 『젠더와 사회』, 동녘, 2014, 492쪽.  
캐럴 페이트만, 이충훈·유영근 역,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이후, 2001.  
캐럴 페이트만, 이남석·이현애 역, 「신은 인간에게 배우자를 정해줬다-혹스, 가부장제, 성교권」, 『페미니즘 정치사상사』, 도서출판 이후, 2004, 93-122쪽.  
한국여성 연구회, 『여성학 강의(개정판)』, 동녘, 1994, 371쪽.

### 3. 논문

- 김광기, 「베버, 뒤르케임, 슈츠, 그리고 2016~2017년 : 촛불혁명을 보는 사회

- 학의 시각」, 『한국사회학』 52(2), 한국사회학회, 2018, 85-113쪽.
- 김병곤·김민수, 『이주민 시민권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시민권의 한계와 대안: 벤하비브의 시민권 정치를 중심으로』, 『평화연구』 23(1),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5, 295-328쪽.
- 김상준, 『2016-2017년 촛불혁명의 역사적 위상과 목표-‘독재의 순환고리 끊기’와 ‘한반도 양국체제 정립’』, 『사회와이론』 통권 제31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17, 63-90쪽.
- 김선택, 『민주적 정당화의 관점에서 본 정부형태론-촛불혁명은 정부형태의 변경을 요구하였나』, 『공법학연구』 18(4),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85-109쪽.
- 김양선,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 연구-1980년대 여성문제 소설 다시 읽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215-234쪽.
- 김 옥, 『개헌, 눈앞의 꿈수인가 촛불혁명의 완성인가』, 『인물과 사상』 241, 인물과사상사, 2018, 123-138쪽.
- 김중엽, 『촛불혁명의 새로운 단계를 향하여』, 『창작과비평』 45(2), 창비, 2017, 2-9쪽.
- 박광형·전희진, 『긴장의 원천인 시민권: 시민권 담론의 다층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문화와 정치』 4(2),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7, 111-140쪽.
- 서윤호, 『이주사회에서의 정치적 성원권-벤하비브의 논의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58,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195-223쪽.
- 서윤호, 『분배적 정의와 정치적 성원권-왈저의 논의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42,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95-124쪽.
- 손호철,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반복과 차이』, 『현대정치연구』 10(2),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7, 77-97쪽.
- 이나영,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 『월간 복지동향』 234,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8, 1-11쪽.
- 이보미, 『페이트만의 페미니즘 연구-계약론 비판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76쪽.

이선옥,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또 하나의 문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8-36쪽.

이현재, 「우리 사회에 나타난 여성의 시민의식과 시민운동의 여성화」, 『지식의 지평』 20, 대우재단, 2016, 1-13쪽.

이혜령, 「빛나는 성과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상허학회, 2016, 409-454쪽.

장미경, 「시민권의 개념의 의미 확장과 변화-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을 넘어서」, 『한국사회학』 35(6), 한국사회학회, 2001, 59-77쪽.

정인경, 「시민권의 페미니즘적 개조를 위한 시론: 뤼스 이리가레(Luce Irigaray)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8(1), 한국여성학회, 2012, 1-34쪽.

정인경, 「젠더주류화와 여성의 시민권」, 『한국정치학회보』 46(4), 한국정치학회, 2012, 53-72쪽.

정인경, 「적극적 조치, 시민권의 평등을 향한 도전」, 『한국여성학』 33(4), 한국여성학회, 2017, 179-207쪽.

정태석, 「87년 체제와 시민사회 이데올로기-가치들의 변화-촛불혁명과 사회체제 전환의 전망」, 『경제와 사회』 통권 제117호, 비판사회학회, 2018, 18-61쪽.

정희진·정현백, 「여성운동의 중심에 물음표를 매긴다」, 『창작과비평』 34(3), 창비, 2006, 231-257쪽.

지은희, 「내부로부터 본 여성운동-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이론』 (22), 한국사회이론학회, 2002, 99-150쪽.

차미령, 「한국 전쟁과 신원 증명 장치의 기원-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주권의 문제」, 『구보학보』 18집, 구보학회, 449-476쪽.

천정환, 「'1987년형 민주주의'의 종언과 촛불항쟁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 대중민주주의의 문화정치를 중심으로」, 『문화과학』 94, 문화과학

사, 2018, 22-44쪽.

한경희, 「나는 왜 ‘여성’이 되었는가-박완서 장편소설 『목마른 계절』(1978)론」, 『현대소설연구』 7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519-557쪽.

히라금, 「여성주의적 ‘자율성’ 개념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학』 11, 한국여성학회, 1995, 7-26쪽.

히라금, 「여성의 행위성과 가족 관념의 재구성」, 『철학논총』 67, 새한철학회, 2012, 297-316쪽.

히라금, 「관계적 자율성에 대한 철학적 연구-절차적 자율성과 실질적 자율성 논쟁을 중심으로」, 『철학』 제120집, 한국철학회, 2014, 103-129쪽.



## Abstract

The feminist politics of Park Wan-seo's novel, *A Standing Woman*

: The gender-structure of citizenship in the contract of marriage

Shin, Saet-byeol

A series of feminism movements on the continuation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that began in the fall of 2016 seems to be promoting Korean society followed by the so called '1987 regime'. However, as the feminism movement was assessed (assessed in dismay on one hand) as part of 'identity politics', it seems that the implications are not being pondered sufficiently by serious comments and requests for the next democracy. What the recent feminism movement is crying out is a full dimensional transformation of the entire Korean society, from law, institution, and culture, and in that it is the voices of female rights that have been excluded or discriminated in the judici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pheres, it ultimately is a fundamental critique of the power structure that the 1987 regime has shaped and encouraged. The movement states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itizen society' and 'citizen' category that are the basis of the order.

Park Wan-seo's "*A Standing Woman*", which is searching for the possibility of self reliance of a female as a "citizen" and a "member" of Korean society in the 1980s by coping with the problem of female related to marriage, has gained popularity since its publication in 1985, and behind it was the vigor of female movement, a subcategory of a large scale transformation

movement triggered by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of the 1980s. The reality of the 1980s female life, which had not been converged into the 1987 regime, and the political imagination that extended from it, are latent in this novel, and this provides a guideline useful for looking at the flaws of the 1987 regime and the prospects of the next democracy. This novel, duplicated in the narrative of mother and daughter, shows precisely two ways in which the experiment of female subjectivity fails.

First, when a middle aged female 'Gyeong-suk' with a professor husband calls the void of life and insists on an equal exchange of love between husband and wife, her husband unilaterally declares the breakdown of marriage. This setting, in which Gyeong-suk's sudden love request, who has been devoted to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as a mother and wife, stops the extension of the marriage contract, implies the peculiarity of a marriage contract in which a female cannot be recognized as a subject of a contract equal to a male. Unlike normal contracts, in marriage contracts in which a female is essentially included, the female is not recognized as a modern citizen with the right of conciliation and settlement of free contracts. In this novel, it is in itself a monopoly act that a female tells her opinion about a divorce, and she can only qualify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in limited roles while playing a role that is forced upon her.

Second, 'Yeon-ji', the daughter of Gyeong-suk, wants to realize her 'gender equality' in a marriage contract that she has aimed for her life. So, while her husband, 'Cheol-min', is in charge of housework, she promises to be responsible for the finances of the family as a reporter, and performs as is. However, in the face of

social gaze and pressure, the subversion of this normative gender role continues to lead to discords and conflicts between the couple, and even Yeon-ji experiences pregnancy and abortion and feels limits of the performance of masculine roles. The pursuit of gender equality, which erased the distinction between male and female, ultimately leads them to misfortune, and Yeon-ji, who has never given up his subjectivity as a citizen, has become isolated from the network of her family and society. This proves that there is no 'gender difference' in the abstraction of 'citizen', the contemporary subject of modern contract, and that the concrete life of 'female' is not engraved.

According to this novel, the female, like Yeon-ji, tries to fit herself into the 'male' to keep the citizen's rights, or, as in Gyeong-suk, she cannot but be left as a member of the society as she identifies herself with a face of the 'male forced female'. In short, between citizenship and membership, this novel asks what exit to search for to enable female self reliance. Choosing one of the two options may not be the right answer. This novel attempts to make the impossible representation of a 'female-citizen' in order to make way for female to live as a citizen and a member.

Key words : citizenship, membership, feminism, Park Wan-seo, *A Standing Woman*, marriage, contract, female

■ 본 논문은 2018년 11월 22일에 접수되어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8년 12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